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2019-85
----------	---------

제출년월일 : 2019년 11월 일
제출자 : 강서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하수도법」 제8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직접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2조에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제정 1998. 5. 19. 조례 제415호)를 폐지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조례

- 「하수도법」 및 동법 시행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동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9.09.30.~10.20.)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조례

폐지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의안의 내용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함.

4. 작성자 : 안전교통국 물관리과 과장 이상훈

(담당 : 토목8급 정대영 / ☎ 2600-6953)

하수도법

제80조(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11. 14.>

1.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
2.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 11. 14.>

1. 제44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자
2. 제6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1. 7., 2011. 4. 5., 2011. 11. 14., 2012. 2. 1., 2013. 7. 16.>

1.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지의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3.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로서 제1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류수의 수질검사, 찌꺼기의 성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 3의2.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 점용행위를 한 자
5.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유출시킨 자

6.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7.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사용한 자
8.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폐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0.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11.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맡긴 자
12. 제3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한 자
13. 제3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4. 제4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지 아니한 자
15.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6. 제45조제1항·제51조제1항·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17.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구역 그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
18.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자
19.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0.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1. 제52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2. 제5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3. 제5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4.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5.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요원·기술인력 또는 기술인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26. 제6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록·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27.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28. 제69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9. 1. 7., 2011. 11. 14.>

1. 제2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명령을 위반하여 배수설비의 공사를 한 자

3.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설치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0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에 관한 공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 1. 7., 2011. 11. 14., 2013. 7. 16.>

하수도법 시행령

제4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3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나. 최종 방류구가 다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경우 각각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별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 다. 2개 이상의 항목이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부과금액이 높은 항목에 대해서만 적용하여 부과한다.
- 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정상적으로 측정된 3시간 평균치가 연속 3회 이상 또는 1주일에 10회 이상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를 위반횟수 1회로 한다.
-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단위: 만원)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7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 1) 처리용량이 50m ³ /일 미만	법 제80조제2항제1호	100	200	300

2) 처리용량이 50m ³ /일 이상 500m ³ /일 미만		200	300	400
3) 처리용량이 500m ³ /일 이상		300	400	500
나. 법 제7조에 따른 간이공공하수처리 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	법 제80조제2항제1호	100	200	300
다. 법 제7조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	법 제80조제2항제1호	200	300	400
라. 법 제7조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	법 제80조제2항제1호			
1) 처리용량 1m ³ /일 이하				
가)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10	20	40
나)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20	40	80
다)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30	60	100
라)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50	100	200
2) 처리용량 1m ³ /일 초과 5m ³ /일 미만				
가)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20	40	80
나)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30	60	100
다)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40	80	150

라)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70	120	220
3) 처리용량 5m ³ /일 이상 10m ³ /일 미만			
가)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30	60	100
나)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40	80	150
다)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50	100	200
라)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100	150	250
4) 처리용량 10m ³ /일 이상 20m ³ /일 미만			
가)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40	80	150
나)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50	100	200
다)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70	120	220
라)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120	200	300
5) 처리용량 20m ³ /일 이상 50m ³ /일 미만			
가)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50	100	200
나)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	70	120	220

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다)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 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100	150	250
라)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 의 3.0배 이상	150	250	350
6) 처리용량 50m ³ /일 이상 100m ³ /일 미 만			
가)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70	120	220
나)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100	150	250
다)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120	200	300
라)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200	300	400
7) 처리용량 100m ³ /일 이상 300m ³ /일 미만			
가)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 의 1.5배 미만	100	150	250
나)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 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120	200	300
다)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 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150	250	350
라)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 의 3.0배 이상	250	350	450
8) 처리용량 300m ³ /일 이상			

가)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120	200	300
나)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150	250	350
다)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200	300	400
라)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300	400	500
마. 법 제7조에 따른 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80조제2항제1호			
1) 처리대상인원 10명 초과 20명 미만		20	30	40
2) 처리대상인원 20명 이상 30명 미만		30	40	50
3) 처리대상인원 30명 이상 50명 미만		40	50	60
4) 처리대상인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		50	60	80
5) 처리대상인원 100명 이상 500명 미만		60	70	90
6) 처리대상인원 500명 이상		70	80	100
바. 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토지의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1호	50	70	100
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한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2호	50	70	100
아.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관리	법 제80조제4항제3호	50	70	100

하는 자로서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방류수의 수질검사, 찌꺼기의 성분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검사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자.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3호의2	50	70	100
차.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2항2호			
1) 처리용량이 50m ³ /일 이상 500m ³ /일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		100	150	250
2) 처리용량이 500m ³ /일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300	400	500
카.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5항제1호	30	40	50
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공하수도 점용행위를 한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4호	50	70	100
파.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하수를 유출시킨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5호	50	70	100
하.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대행명령을 위반하여 배수설비의 공사를 한 경우	법 제80조제5항제2호	30	40	50
거.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설치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5항제3호	30	40	50
너.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6호	50	70	100
더.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법 제80조제5항제	30	40	50

이행하지 않은 경우	4호			
리. 법 제31조에 따른 배수설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80조제5항제5호	30	40	50
머.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에 관한 공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법 제80조제5항제6호	30	40	50
버.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사용한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7호	50	70	100
서. 법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8호	50	70	100
어.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폐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9호	50	70	100
저. 법 제37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10호	100	100	100
처.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맡긴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11호	100	100	100
커. 법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유지·관리한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12호			
1) 처리용량 2m ³ /일 이하 오수처리시설, 처리대상 인원 10명 이하의 정화조		10	20	30
2) 처리용량 2m ³ /일 초과 5m ³ /일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10명 초과 20명 미만의 정화조		20	30	40
3) 처리용량 5m ³ /일 이상 10m ³ /일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20명 이상 30명 미만의 정화조		30	40	50

4) 처리용량 10m ³ /일 이상 20m ³ /일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정화조		40	50	60
5) 처리용량 20m ³ /일 이상 50m ³ /일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정화조		50	60	80
6) 처리용량 50m ³ /일 이상 300m ³ /일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100명 이상 500명 미만의 정화조		60	70	90
7) 처리용량 300m ³ /일 이상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500명 이상의 정화조		70	80	100
터. 법 제39조제6항을 위반하여 운영기구를 설치하지 않거나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13호	50	70	100
퍼. 법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14호	50	70	100
허.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15호	50	70	100
고.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80조제3항제1호	100	200	300
노. 법 제45조제1항·제51조제1항·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16호	100	100	100
도.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영업구역 그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17호	100	100	100

로.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 18호	100	100	100
모.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 19호	100	100	100
보.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 20호	100	100	100
소.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 21호	100	100	100
오.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 22호	100	100	100
조. 법 제56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 23호	50	70	100
초. 법 제6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3항제 2호	100	200	300
코.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 24호	50	70	100
토. 법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요원·기술인력 또는 기술인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 25호	50	70	100
포. 법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록·보존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 26호	50	70	100
호.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법 제80조제4항	50	70	100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를 한 경우	제27호			
구. 법 제69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80조제4항 제28호	100	100	100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9조(사무의 위임) ① 다음 각 호의 사무는 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4. 법 제8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4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① 이 조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5979호, 2018. 12. 18,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854, 3799

제3장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6. 12. 2.>

제17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 ① 당사자는 과태료,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증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내는 경우에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납부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제19조(과태료 부과 및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제36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정정부과 하는 등 해당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제21조(법원에의 통보)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행정청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인 가운데 1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질서위반행위의 조사)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의 청취

2. 당사자에 대한 보고 명령 또는 자료 제출의 명령

②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고자 하는 행정청 소속 직원은 당사자에게 검사 개시 7일 전까지 검사 대상 및 검사 이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 달성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또는 검사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제23조(자료제공의 요청) 행정청은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6. 12. 2.>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증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삭제 <2018. 12. 18.>

제24조의2(상속재산 등에 대한 집행) ①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법인에 대한 과태료는 법인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4. 5.]

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태료(체납된 과태료와 가산금, 증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행정청에 신청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하는 경우 그 유예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이나 제공된 담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과태료 징수금에 대하여 가산금, 증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교부청구는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⑤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징수유예등을 취소하고, 유예된 과태료 징수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과태료 징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2. 담보의 제공이나 변경,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행정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유예한 기한까지 과태료 징수금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⑥ 과태료 징수유예등의 방식과 절차, 그 밖에 징수유예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

제24조의4(결손처분)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는 등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8.]

부칙 <제15979호, 2018. 12.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